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2. 30.(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9차, 제7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7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승인에 관한 건 (2020-72-32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의 추가 제출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조선방송이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재작성하여 2020년 12월 9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를 승인한다’입니다. ‘<나>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20년 12월 9일에 제출한 추가계획을 승인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위원회가 (주)조선방송 및 (주)채널에이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 당시 부가한 재승인 조건 중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7월 17일과 7월 20일 각각 사업자가 사업계획 및 추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2차 계획을 제출하였고, 12월 9일 다시 3차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입니다.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신청서 중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재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주)채널에이입니다. <4>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취재윤리 등을 담은 기자 준칙에 대한 임직원 내부교육을 분기마다 시행하는 등 교육제도를 보완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번 조건입니다. 방송사업 수행을 위해 구비하고 있는 윤리강령, 방송강령 등을 재정비하고 취재윤리를 포함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것. 아울러 내부규정을 위반한 기자·PD 등에 대해 징계규정을 강화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사업자별 제출계획 주요내용입니다.

(㉞)조선방송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관리 체계, 경영진 저널리즘 교육 의무화, 취재 윤리 준수를 위한 내부규정 개정·기자교육 강화, 방송인의 품격제고를 위한 징계제도의 강화, 체계적인 심의교육 실시,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TV조선 저널리즘 평가 위원회> 및 <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신설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는 <4>번 조건과 관련하여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찰출입 제도 개선TF 운영, 익명 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고, <5>번과 관련하여서는 기자 윤리규칙 제정, 상벌 규정의 징계대상에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신설할 것을 예정하는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낮게 나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의 향후계획을 위원회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재승인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조선방송은 재승인 신청서의 사업계획서 중 해당 항목을 재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의 더블팩트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계획 등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조선 방송이 재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부가된 재승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채널에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4월 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을 당시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계획과 관련 내부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재승인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채널에이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검찰 출입제도 개선 TF 운영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기자 윤리규칙 제정 및 징계 규정 강화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과 관련 규정 정비계획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윤리강령 위반여부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윤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그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양사가 제출한 재작성 사업계획서 및 추가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해당 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말 재승인 조건에 따른 위원회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채널A에 대해서는 윤리 위원회 운영규정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에 사업계획 및 추가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접수하여 '21년 중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TV조선은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서 새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실수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

○ 김창룡 상임위원

- 전체 내용을 다 마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위원회가 빠져 있는데 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이 있어서 그것을 왜 빠뜨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월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1월까지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주)채널에이는 보시다시피 윤리규칙 제정이 올 7월 14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윤리규칙이 제정된 뒤에 교육을 시켰는지 혹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윤리규칙 포함해서 개정이 되어서 윤리규칙 보도제작 가이드라인 교육을 7월에 했으니까 또 개정된 것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는지 해서 여쭙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난 4월에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교육한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분기별로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7월 14일 이후 몇 번 교육을 시켰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6번 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확인하셨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조건에 징계규정 강화를 (주)채널에이가 해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윤리강령이나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용적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다듬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언론사, 방송사의 윤리강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주)채널에이는 특별하게 윤리강령 위반으로 해서 기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2004년에 만든 KBS 규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된 정도의 내용이라서 이런 정도의 윤리위원회 규정 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는 윤리 위법자들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잘 가이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채널에이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시면 2004년도 KBS에서 만든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부 윤리위원회가 하는 것은 권고나 경고 정도 하고, 인사 징계는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KBS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공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은 인사위원회조차 외부의 교수나 전문가나 변호사가 들어와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론사에 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료기자나 PD가 윤리를 위반했다고 징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에서 윤리위원회가 외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요구도 일부에는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윤리강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주)채널에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안전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 추가제출 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방통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방송사가 제출한 계획에서 보강-보강-보강의 절차를 거쳐 오늘 보고가 됐고, 의결을 남겨 두고 있는데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채널에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재승인 조건 중 6항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건 등과 관련하여 (주)채널에이가 재승인 의결 전에

2020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 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재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 중 지난 4월 9일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주)채널에이 자체에서 조사된 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국민적인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한 방송사의 공적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특히 사건이 진행 중인 내용이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안건이 올해 종편 재승인 관련 마지막 안건입니다. 안건 담당부서인 방송지원정책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이 공히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승인 과정에서 부가된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서 추가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의 작성 제출, 규정 개정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고 그런 조건들은 형식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획의 작성 또는 규정의 개정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사무처에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주)채널에이 윤리위원회 윤리규정은 보완하도록 통보할 때 그렇게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 과정 부분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 (2020-72-32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을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2019년 7월 19일 의결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중 SO와 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본계획은 SO와 위성방송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대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본 심사, 약식 심사, 사무처 자체 검토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무처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본 심사, 약식 심사, 사무처 검토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송구역, 방송분야의 변경, 특수관계자 간 법인 합병 등 단순 반복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하고 있습니다. 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본 심사위원회 또는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본심사위 또는 약식심사위 구분 없이 심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로서 ‘필요 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전동의 심사의 효율화·명확화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SO 등 합병 및 분할에 대해서는 본 심사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제한성 관련 조건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가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경우 약식 심사위를 운영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후 절차 흐름도는 밑의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관련해서는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서면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의결 이후 도래하는 변경허가 사전동의 건 심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80% 얻었을 때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변경 사항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재허가 심사는 650점 이상인 경우에는 약식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변경허가는 좀 더 강화된 심사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허가 심사와 변경허가 심사가 기준이 다른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원래 사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재허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수 배점을 해서 점수로 평가를 했었고,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가부를 결정해 왔었는데 지난번 SKB와 티브로드 합병 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동의를 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배점표를 만들어서 점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을 추후 발표하게 되니까 과기정통부도 점수로 배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중하다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사업자의 SO와 IPTV 간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80% 이상이라고 해서 재허가보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게 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유료방송 (재)허가 등에 이런 사전동의제도 자체가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유료방송 정책 업무 일원화는 향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계획 변경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시간 단축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에 대해 저희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 및 허가 절차가 과기정통부와 이원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범자 입장에서는 정부부처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 (2020-72-324)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혜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계획 관련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지역MBC와 지역민방 등 지역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에는 지원계획(안)에 대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고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역방송사,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3일 제3차 지원계획(안)에 대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증액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다양화, 규제 개선 종합적 검토, 지역 미디어로서 공공성 확립,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더 가까워진 지역방송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지역 밀착 콘텐츠 제작·유통을 통한 지역성 구현,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자생적 기반 마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2대 정책과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과제 <1>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 및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대형 공익성, 해외 수출형, 파일럿, UHD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방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송사별 맞춤형 교육 및 제작 컨설팅 등을 위해 방송사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콘텐츠 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콘텐츠 마켓과 피칭포럼 참여 및 해외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 유통 관련 개별 협의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과제 <2>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입니다. 현행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규제인 영향력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방송의 특성에 맞는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입니다. 유료방송 등 타 매체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방송 협찬고지 시, '1회 고지시간'을 타방송사와 동일하게 30초 이내에서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 등 협찬고지 관련 형식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편성 규제 합리화입니다. 수중계 허용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정책과제 <3>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지역방송 경영의 자율성·투명성 개선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로 부여된 재허가 조건상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방송사업 외의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부설기관 운영 시, 운영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송 기능 확대입니다.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지역 재난영상 및 보도를 공유하는 재난방송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방송이 체계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관련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밀착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고령층 대상 쉬운 뉴스, 취재 비하인드 등 다양한 형식의 뉴스 제작과 지역뉴스의 브랜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지역 뉴스 생산자로서 지역 소식과 정보를 게재하고 유통·공유하는 '지역 뉴스 앱(APP)'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과제 <4>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입니다.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입니다. OTT, SNS, 인터넷 포털, 1인 미디어 등 신규 플랫폼 및 5G, AI, AR/VR 등 ICT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방송사가 신유형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 조성입니다. TV 외의 다양한 콘텐츠 시청 통로 확보를 위해 OTT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MCN, 1인 미디어 등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방송사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과제 <5>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방송 제작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방송, 지자체, 유관기관 간 콘텐츠 제작·유통 등 협력 범위 및 적정 역할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 및 재난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지역 축제,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역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상습 재난지역을 선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일정입니다.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지원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현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고 연구반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는 못 했고 두 차례에 걸친 서면을 통한 회의를 통해 오늘 결과물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3차 계획은 '15년부터 시행되었던 1·2차 지원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과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폭우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역할과 존재 가치가 부각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OTT 등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이용 증가와 지역방송의 매출 감소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광고 편성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의 힘든 상황을 저희가 충실히 대변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놓여져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년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방송에 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가 숙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처와 충실하게 논의 하고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방송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 현 부위원장님께서 그간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지원계획을 마련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역방송 발전계획이 아주 좋은 방안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방송의 체제로,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방송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방송들을 도와서 지역방송이 지역에 밀착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인데 방안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지금의 어려운 지역방송이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재원 마련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 있는데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사무처가 고민해 주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지역방송이 구조적으로 보면 일종의 공기업 비슷하게 고임금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역방송 전체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것이 틀림없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 가운데 큰 부분이 부실한 경영, 그리고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고임금 인력이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현재 어떤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방송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전해선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위원님께서 처음에 새로운 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기금의 별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기금 설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방송사 입장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어서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이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역방송의 실질적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사에서는 현재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의 직접 지원이나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방송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없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지역방송의 현재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령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액을 늘릴 때 기본적으로 먼저 지역방송사의 구조조정이나 경영계획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 지역방송의 현재 인력구조에 관한 현황 파악이 방통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방송사로부터 재허가나 혹은 방송산업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가서 전체적인 세부 내용들과 개별 임금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계속적으로 반영했던 것 중 하나가 경영혁신이나 소유·경영분리 그리고 주주들에게 일반 업종보다 높은 배당을 하는 것들을 자제하도록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시장변화에 맞추어서 광역화 부분은 계속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고 일부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시다시피 지역방송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자체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안이나 구조개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악순환의 고리로 오는 순간에 접어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끊으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안 전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이 방안의 수행 방식이나 이행 점진 또는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걱정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지역방송 발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나 안위원님이 두 분이냐 들어가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효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 마련도 반드시 현황 파악에서부터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방통위가 예산 지원은 현재 구조에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올해도 보니까 100억원 정도 올렸다가 깎여서 40억원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내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현장을 다녀 보면 결과가 신통치 않다 보니까 방통위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예산 확보 문제에 지역방송국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방송국이 나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방송사나 지역의 경제를 위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조해 주어야 할 텐데 지역방송국과 지역 국회의원 또 방통위가 같이 힘을 합쳐야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 방송국들도 손만 놓고 돈 더 달라는 식으로만 요구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지역방송국의 이런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 차원에서 법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다, 이것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방송의 공적책임도 강화하겠다, 이런저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국회에 가면 아리랑TV나 국악방송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통위가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부위원장이셨지요?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은 벌써 2014년에 마련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지역방송의 사정은 6년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악화

되었습니다. 물론 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히 재원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발전계획은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모아서 노력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역방송 스스로의 자구노력입니다. 경영개선 또한 지역맞춤형 특화 전략을 짜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제 제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여론 다양성이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방송기업 하나하나에 대한 생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역시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애초의 입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 (2020-72-325)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의결안건 <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총 10개소를 지정기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관·단체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

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부터 17개 시·도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12월 18일에 여가부에서 기관·단체에 대한 지정·고시 회신이 왔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부분에 이어 24일에 1개 기관이 더 지정·회신이 와서 12월 말까지 17개 시·도와 국가 여가부 쪽에서 지정회신을 받은 부분입니다. 고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즉 여성가족부에서 삭제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아 보조하는 기관·단체 8개소와 시·도(서울시·경기도)가 삭제지원 사업비를 보조하는 기관·단체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사업의 특성 상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이 갱신됨에 따라, 지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목록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10개소에 대한 기관·단체명이고, 추천기관과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명을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고시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내일 자로 지정·고시문에 관보게재하고, 2021년 1/4분기가 지나면 지자체 수요 등을 다시 추가 조사해서 기관·단체를 추가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일부 지자체 등에서 '21년 예산사업 공모절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사업수행주체가 '21년 2~3월 사이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확정되면 저희 쪽에서 추가 고시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단체를 지정하면 이 단체들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이 부분은 지난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 부분의 조항이 통과되면서 <붙임 2>를 보시면 관련 법령을 붙여 놓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피해자 내지는 이런 저희가 기관·단체로 지정한 쪽에서 요청하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부분이...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삭제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의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은 기본 플랫폼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지금 고시한 기관·단체가...

○ **김효재 상임위원**

- 발견하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예, 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이나 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당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에도 방통위가 정하는 곳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되어서 여가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곳을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방통위가 17개 시·도에 요청했음에도 이 중 경기·서울만 추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당소 리스트를 살펴보니 전국에 137개밖에 안 되고,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광주 4곳, 울산 4곳, 세종은 1곳에 불과한데 이번에 추가되는 단체 목록에도 이들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요건을 갖춘 기관들을 내년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무처에서는 해당 지자체들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앞서 김창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예산사업 공모절차로 인해 사업수행 기관이 2~3월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관들이 확정되고 나서 신고·삭제 요청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고지도 지체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관·단체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N번방 법이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입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저희가 기술적 조치 부분은 2021년 12월 10일로 1년간 시행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저희가 성능평가 기관 지정에 대한 고시 부분도 다시 한 번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할 것이고, 성능평가를 위해 기술적 조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부분들은 '21년에 추진해서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21년도 말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N번방 문제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안이고, 그 이후로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고 전 국민들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 내지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까지 포함되어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의 토론들이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지정 고시를 통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결국은 시행이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또 입법도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불법촬영물들의 유통이 예전과 별 다르지 않다거나 더 증가했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주관 부처의 실행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제도의 불비를 타할 것들이 아니라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 역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신설하고, 11가지 세부 위반 유형을 2017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법령 준수 유도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유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가> 적용대상 및 범위입니다. 적용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상 플로팅광고를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앱 운영자입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되는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정보라고 하면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 등 형태에 무관하게 기사, 게시물 등 광고 이외의 정보를 모두 포괄합니다. <나> 세부 유형 및 사례입니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세부유형을 총 4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각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삭제표시 클릭 시 팝업 광고가 생성된다든지 삭제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광고로 마우스커서를 이동할 때만 노출하는 등 신유형 사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세부유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유형은 <1>번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2>번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3>번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4>번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광고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기술변화에 따른 광고형태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안내서에 제시된 유형 및 예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 기타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및 절차와 금지행위 위반 시 사실조사 및 제재 사항·절차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3> 행정사항입니다. 본 안내서는 '플로팅광고 모니터링' 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자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여 자율 점검 등 법령 준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직접 플로팅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신고 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인터넷을 보면 신발 속에 들어 있는 작은 모래알처럼 크지 않은 일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21개 언론사에 이것 하지 말라고 통보한 바가 있었지요?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때 이의제기한 언론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지요?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그 당시 의결할 때 이의제기를 문서를 제출한 언론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서...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지난번 부분인데 크게는 어쨌든 조금 더 행정지도를 많이 했더라면 법령을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안내가 안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언론사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금지행위를 정하면서 널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알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알면서도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서는 잘 마련이 된 것 같고, 특히 사업자들이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삭제 표시가 2개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있는 데도 있는데 2개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안내서에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이것은 지금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서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삭제 하나만 되어서 삭제하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삭제가 2개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 누르니까 또 다른 데로 인도해서 한 번 더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잘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더 홍보도 하고 계도해서 즉각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안내서에 예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텐데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가 <나>항인데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확장된 광고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해당 광고가 확장된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예. 예를 들어 유명한 새벽 배송업체인데 기사 하단 광고에도 업체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 표시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광고가 전면에 뜨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안내서에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입니다. 모바일을 쓸 때 '☒' 표시를 눌렀을 때 변환되는 이후 그것이 예시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알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 표시를 눌렀는데 광고가 뜨는 경우, 다른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연예인 관련 기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열독률이 높은 기사의 하단에 떠돌이 광고가 있고, 그것을 '☒' 표시를 눌렀는데 전면광고로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에는 그런 경우가 이것이 <마>에 해당됩니까?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이것이 <나> 내지는 <마> 부분에 해당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많이 열거하는 것이 또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래서 예시 및 설명에 다 포함시켜서….

○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시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만들지 않고 안내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 수시로 계속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해서 안내서 자체도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 플로팅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서가 나온 것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새로운 유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내서를 증보·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후규제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자 교육, 홍보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늘도 모바일 폰에서 무엇을 하다 게임화면이 딱 뜨더니 그 화면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멈춰 있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김호재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신발 안에 있는 모래알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사소한 불편이나 불만사항들을 수시로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플로팅 광고 관련해서 안내서를 제정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하는 입장에서 볼 때 법률의 부재가 책임을 면해 주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등 법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하나하나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내서 해소해 주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안내서 제정 및 배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마친 것뿐만 아니라 올해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안건 처리한 것이 총 200여건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16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200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거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일상 업무를 하면서도 코로나 대응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방역을 방해하는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나름 적극적으로 해 왔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체계가 앞으로 대형 감염병 관련해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종편 재승인, 지상파 재허가를 포함해서 민감한 이슈들도 비판은 있었으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사무처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자 분들도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2021년 신축년에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안건 처리를 마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마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폐회】